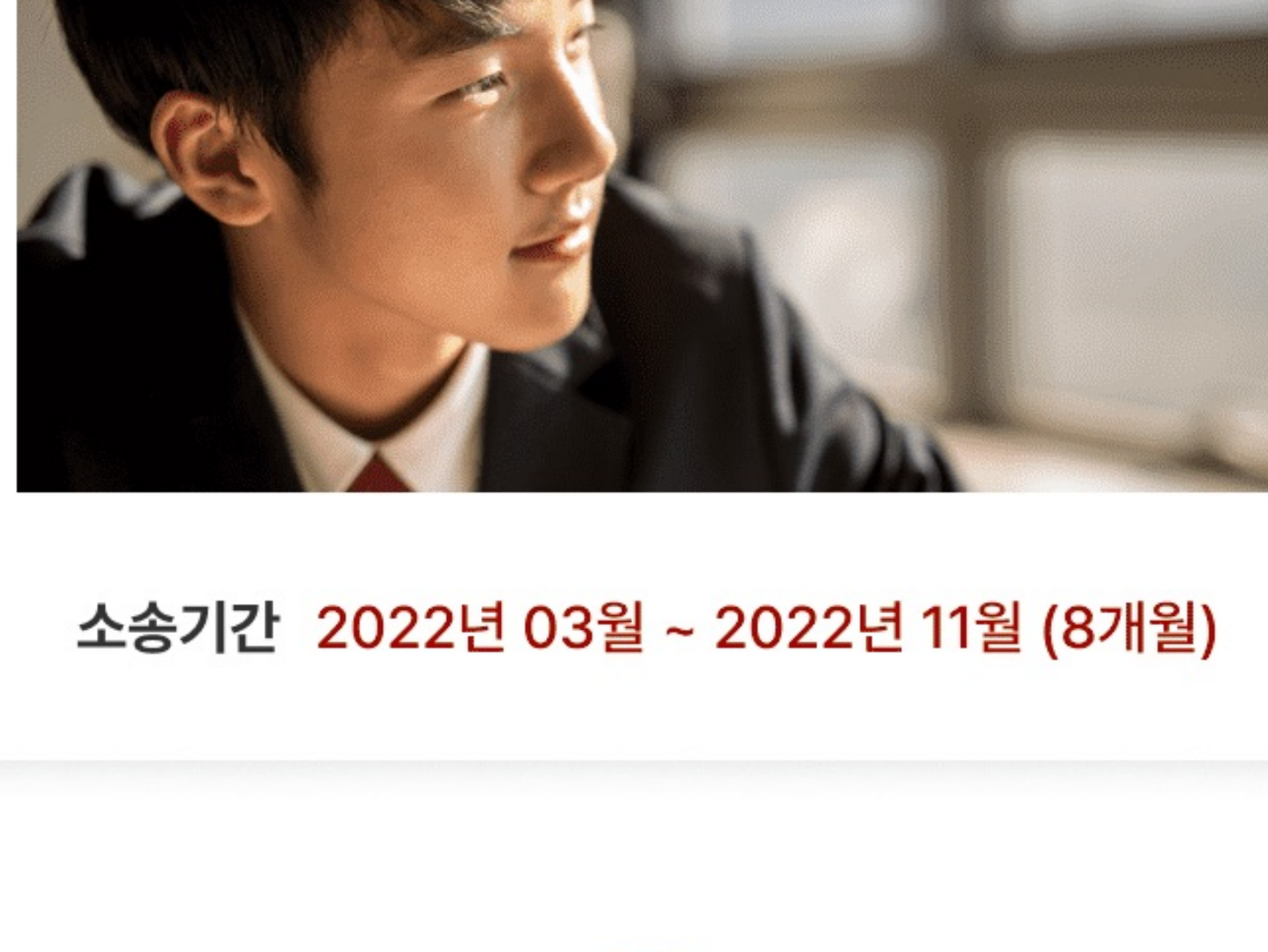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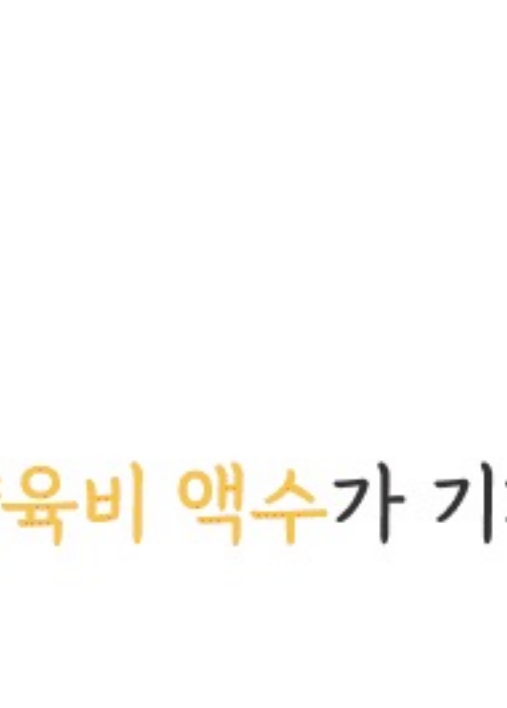


과거 양육비로 100,000,000원 인정받은 사건!

양육비 청구



소송기간 2022년 03월 ~ 2022년 11월 (8개월)



양육비 청구

"양육비 부담조사에는 양육비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"

"전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받아주세요."



50대 중반 여성 의뢰인

지역 : 대전
결혼기간 : 15년
자녀 수 : 1명
관할법원 : 대전가정법원

양육비 청구, 과거 양육비로 100,000,000원을 인정받은 사건!



청구 사유

전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 2,000,000원을 지급한다.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.

하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, 양육비 부담조사에는 양육비를 상대방이 부담한다.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양육비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

STORY

전 남편과의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2,000,000원 부담한다. 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.



하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, 양육비 부담 조사에는 양육비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
의뢰인은 과거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할 의무가 있었기에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

이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 이혼/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.

PROCESS



법무법인대세 방문 · 상담



전담팀 배정



소송제기

01 사건수임

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꼭 받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대세 이혼/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.

02 사건검토

과거 양육비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세 이혼/가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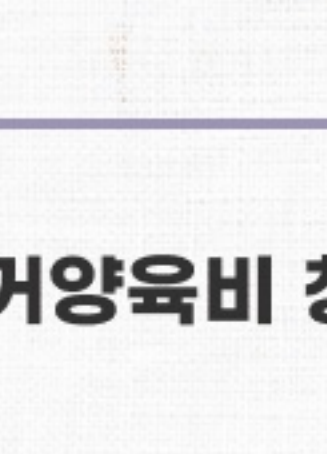
03 소송제기

전 남편은 청구인의 양육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하지만 법무법인 대세 이혼/가사 전문 변호사는 심판은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,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
04 사건결과

그 결과 전 남편은 의뢰인에게 자녀의 과거 양육비로 100,000,000원을 지급하라.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

RESULT



과거양육비 청구

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!

- 이혼
- 이혼소송 위자료
- 재산분할
- 과거양육비 청구 100,000,000원
- 양육비 변경

법무법인 대세 이혼/가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, 의뢰인과 전 남편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양육비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통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

KEY POINT

과거 양육비 청구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부분입니다.

이를 체크하지 못하고 지나버리면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해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
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대세 이혼/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
